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욱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의회의 입법 및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강화하고,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고문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고문의 정원을 2인에서 5인으로 확대 (안 제3조)
- 고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(안 제7조 및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8월 2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(규칙)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인”을 “5인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, 법률문제 및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과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은 「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고문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원) 고문의 정원은 <u>2인</u> 이내로 한다.	제3조(정원) ----- <u>5인</u> -----.
제7조(회의) ① 의장은 입법, 법률문제 및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	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, 법률문제 및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
제9조(수당)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.	제9조(수당)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비용과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은 「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③ 고문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「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	<삭 제>